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가소109971 재산분할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8.부터 C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C에게 지급할 금액 중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자는 교직원 본인이고 예외적으로만 유족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

의 청구는 양도 또는 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에도 저촉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배우자는 퇴직급여 채권자인 교직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우자의 청구를 교직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혼인 생활 중 실제 퇴직급여의 형성에 기여하였던 배우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교직원 본인도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절차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의 재산분할에 동의하였는데, 피고가 교직원 본인의 청구만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교직원 본인의 의사에도 반한다.

퇴직급여는 혼인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교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분할로서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로서 퇴직급여채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하더라도, 퇴직급여의 현금지급을 확보함으로써 퇴직한 교직원 본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양도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직원의 직접 청구만을 허용한다면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오로지 교직원 본인에게만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퇴직연금의 수령이 교직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되어 애초의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

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권현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